

래미안 라그란데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97-400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3.08.23.)로부터 3년 적용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04.(월)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18.(월)	2026.05.20.(수)	2026.05.22.(금)

1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건본주택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여건, 주변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최초 계약 당시 기 선택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시설물의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02_597_4001)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셔서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참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04.(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1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04.(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382** 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12.(화)	2026.05.13.(수)	2026.05.18.(월)	2026.05.20.(수)	2026.05.22.(금)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 301호(청량리동, 재영빌딩) 조합사무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3.08.23.)**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5192호(2026.04.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5길 12, 래미안 라그란데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특별공급 1세대(노부모부양 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노부모 부양	계		
2026930015	01	055.9900	55	55.9900	20.9200	76.9100	57.2100	134.1200	34.1700	-	-	1	120동 1103호
	02	074.9900C	74C	74.9900	24.3700	99.3600	54.1300	153.4900	33.4000	1	1	-	209동 302호
	합 계									1	1	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원)

약식표기 (타입)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재분양비	계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55	120	1103	367,282,000	450,718,000	65,000,000	883,000,000	176,600,000	706,400,000
74c	209	302	414,427,000	508,573,000	35,000,000	958,000,000	191,600,000	766,4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 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74c 209동 302호는 세대분리형 타입으로, 1룸과 2룸사이에 연결문을 설치한 세대입니다.

■ 공통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표기이며, 상기 세대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에 의거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공급금액은 상기 기재된 금액으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당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선) 세부 내역,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원)

주택형	동	호수	품목	내용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
055.9900	120	1103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11,600,000	12,380,000	2,476,000	9,904,000
			가전	인덕션	780,000			
			시스템에어컨	4대(거실+안방+침실1+침실2)	기본			
074.9900C	209	302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12,500,000	16,680,000	3,336,000	13,344,000
			아트월	거실 메인 벽체1면	4,180,000			
			시스템에어컨	4대(거실+안방+침실1+침실2)	기본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금 등	KB국민은행	527801-01-294423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20동1103호 홍길동 → '1201103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80%는 실입주일 또는 키볼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형 냉매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무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 모든 옵션 품목의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장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 기구,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잔금납부 기일은 최대 계약 후 60일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실입주일(열쇠수령일)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및 별도품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0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무주택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고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2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18.(월) ~ 2026.05.27.(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1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일자 및 장소

서류제출 일자	2026.05.20.(수)[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 301호(청량리동, 재영빌딩)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_노부모부양_서류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구비서류”로 대체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본인	· 계약처에 비치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발급)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또는 자녀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요양급여 내역 기존 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직계비속 본인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신청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처에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본인 발급용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아파트 공급계약+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신청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처에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본인 발급용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04.(월))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 및 제출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이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여부, 세대원 관계확인, 기산일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22.(금) 10:00 ~ 16: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 301호(청량리동, 재영빌딩)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선택품목이 기 시공되어 있어 확장 여부 및 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이 공사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일은 주택소유정보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유의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내용을(2023.08.04.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관련 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모든 분양대금은 입주예정자(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잔금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잔금 중 어느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 ※ 잔금 납부 종료일까지 납부를 하셔야하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잔금 납부 종료일의 익일 이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삼성물산(주)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청량리동, 재영빌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법인등록번호	264171-0006736	110111-0015762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정보통신
상호명	(주)전인 CM 건축사사무소외 2개사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주식회사 동화이엔씨
감리금액	8,056,000,000	1,282,000,000	1,307,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최초모집공고일)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577,411,800,000원	제01282023-101-0004000호

* 본 모집공고는 준공 후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 시설

- 주차장(지하), 주민운동시설(옥외),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3개소(배드민턴장 2개소, 일반운동시설 1개소), 게스트하우스 등 (관리사무소 운영 참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단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 알려야 합니다.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분 양 가 결 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27.71 MJ/m ²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59 kgCO ₂ /m ² ·년
	중에너지절감율	30.93 %
인증번호 10-공-에-2-0027		
건축물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1)		
소재지주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2010년 09월 1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2단지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 알려야 합니다.		
등	급	
예비인증 2등급		
분 양 가 결 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30.85 MJ/m ²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8.57 kgCO ₂ /m ² ·년
	중에너지절감율	31.01 %
인증번호 10-공-에-2-0028		
건축물명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아파트 (택지2)		
소재지주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일대		
2010년 09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

1단지



제 1 - 020 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건축물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택지1)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부 분 : 공동주택
인증기간 : 2010년 6월 10일 ~ 사용검사일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0 년 6 월 10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 주 택 연구 원 장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지



제 1 - 021 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건축물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택지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부 분 : 공동주택
인증기간 : 2010년 6월 10일 ~ 사용검사일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0 년 6 월 10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 주 택 연구 원 장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따름.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2.3m (택배차량 진입 출입구 2.7m)	2.3m (획지-1 지하3,5층 2.7m, 획지-2 지하2층 2.7m)	2.1m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97g임.

■ 분양관련 문의 안내

- 분양문의 : ☎ 02-597-4001(평일 10:00~ 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5.10.3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